

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[]신규 []변경 []해지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 (우 -)		
	휴대전화번호		
신청 서비스	대리발급시	[]휴대전화 문자전송(SMS)	[]우편
	본인발급시	[]휴대전화 문자전송(SMS) * 우편으로는 통보하지 않음	

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13조제6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
([]신규 []변경 []해지)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시·군·구·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

유의사항

-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.
- 신청인은 시·군·구·읍·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규,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.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가 중단됩니다.
-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(SMS)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.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- 인감을 신고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.
- 인감증명서 발급 내용은 민원24(www.minwon.go.kr)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